

연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[2007. 2. 20 규칙 제1133호]

일부개정 2007. 9. 17 규칙 제1154호
일부개정 2011. 7. 1 규칙 제1215호
일부개정 2013. 1. 2 규칙 제1247호
일부개정 2014. 11. 5 규칙 제1302호
일부개정 2015. 5. 28 규칙 제1316호
일부개정 2019. 6. 28 규칙 제145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천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6. 28>

제2조(금고지정) ①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경쟁방법에 따라 연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(이하 “금고”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9. 17, 2011. 7. 1, 2019. 6. 28>

1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경우

2. 삭제 <2013. 1. 2>

3. 삭제 <2011. 7. 1>

4. 삭제 <2013. 1. 2>

5.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

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4. 11. 5>

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5. 5. 28>

제3조(금고지정 평가기준)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9. 17>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
2.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
3. 군민이용 편의성
4. 금고업무 관리능력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

6. 그 밖에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군이 정하는 사항

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1. 7. 1>

1. 금고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
2.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·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 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1. 7. 1>

1.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2.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
3.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
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,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,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9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지정절차)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 기간만료 3월 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, 이를 대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·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, 금고약정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9. 17, 2019. 6. 28>

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9. 17>

제12조(금고약정)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군보 등에 공고하고,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9. 17>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, 금고 관련 각종 법령, 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,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, 일시차입 및 기체, 배상 및 변상책임, 비용부담 및 수수료, 계약 해지,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금고약정의 해지)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금고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4조(금고운용 보고) ① 금고는 일반회계·특별회계·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·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5>

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금고는 상·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1. 5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군 금고의 경우에는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따라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7. 9. 17 규칙 제115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7. 1 규칙 제121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3. 1. 2 규칙 제1247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4. 11. 5 규칙 제1302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5. 5. 28 규칙 제1316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9. 6. 28 규칙 제1455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